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제도

h·well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시행안내

유학생 당연적용 주요내용

- **대상 : 유학(D-2), 일반연수(D-4) … 90,616명 예상**

- **가입시기 : ‘21. 3. 1. (월)**
  - 유학(D-2), 초중고생(D-4-3) : 최초입국 시 외국인등록일, 재입국 시 재입국일
  - 어학연수생 등 일반연수(D-4) :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

- **첫회 보험료 : ’21.3월분(10회 분할) → 4월 보험료 합산고지(납부기한 ‘21.3.25.)**
  - 첫회 납부할 보험료 43,490원 = 4월 선납보험료(39,540원) + 1회 분할분(3,950원)

- **한시적 보험료 경감 :** (’21.3.~’22.2.) **70%** → (’22.3.~’23.2.) **60%** → (’23.3.~) **50%** (현행)

h·well 국민건강보험

목 차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01. 개요

02. 제도개선 주요내용

- 유학생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 건강보험 가입시기
- 보험료 경감
-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03. 향후 일정

- 자격취득 및 보험료고지
- 홍보

04. 질의응답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01 개요

개요

배경

-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적용(‘19.7.16.)**
  - 내·외국인간 형평성 제고 및 외국인 건강보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 **외국인 유학생 당연적용 유예(~‘21.2.28.)**
  - 외국인 유학생(D-2, D-4)의 경우, 교육부 등의 요청에 따라 당연가입 적용 유예

- **외국인 유학생 당연적용 시행(‘21.3.1.)**
  - 유예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

개요

추진경과

- ‘20.7.16.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및 유학생 유예 관련 시행규칙 시행
- ‘20.11.6. 유학생 당연적용 관련 복지부 회의
- ‘20.12.3. 정부-대학담당자 간담회
- ‘20.12.18. 유학생 당연적용 복지부-교육부 합의
- ‘21.1.15. ~ 2.15. 시행규칙 입법·행정예고 … 언론보도(1.16.)

개요

추진방향

- **제도 시행기준, 건강보험 가입 필요성 등 안내**
  - 리플릿, 안내문, 홈페이지, SNS, 대학교 담당자 설명회 등

- **코로나19에 따른 유학생 수용성 고려하여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 보험료 경감 한시적 70% 확대, 첫회 보험료 정산분할 등 당연적용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02 제도개선 주요내용

제도개선 주요내용

유학생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시행일('21.3.1.)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에 입국하여 계속 국내체류 중인 유학생은 시행일('21.3.1.)에 건강보험 가입
  ※ 2.22.에 3.1. 일자로 사전 자격취득처리

미납상실 규정 삭제

- 유학생이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해당 규정 삭제
- 이전에 보험료 미납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던 유학생은 '21.3.1. 자격취득

제도개선 주요내용

건강보험 가입시기

자격취득일

체류자격	자격취득일
유학(D-2)	· 최초입국 → 외국인등록일
	· 재입국 → 재입국일
어학연수 등 일반연수(D-4)	·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재외국민·재외동포(F-4) 유학생	· 입국 후 학교 입학일

* 재외국민·재외동포(F-4)의 경우 유학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학증명서 등 제출 필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전까지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음

제도개선 주요내용

보험료 경감

보험료 경감 확대 후 단계적 축소

- ‘21년 3월분부터 외국인 보험료의 30%를 부과하며, 이후 ‘23년까지 매년 10%씩 높여서 부과

기간	~’21.2.	‘21.3. ~ ‘22.2.	‘22.3. ~ ‘23.2.	‘23.3~
부과율	50% (현행)	30%	40%	50% (현행)

기존 가입자도 동일하게 보험료 경감 적용

- 3월 선납보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50% 부과 적용하며, ’21.3.5.에 외국인 보험료의 30% 부과 적용하여 정산 → 4월 선납보험료에서 정산분 차감하여 고지

  * 3월분 선납보험료 고지(’21.2.5.) 이전에 고시 개정 곤란하여 보험료 정산처리

제도개선 주요내용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3월 정산보험료와 4월 선납보험료 동시 부과

- 시행일('21.3.1.)에 건강보험 가입하는 유학생은 3월 보험료 정산분과 4월 보험료가 동시에 부과됨 (납부마감일 '21.3.25.)

3월 정산보험료 10회 분할

- 첫회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1.3.1. 일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유학생의 3월분 정산보험료를 10회 분할하여 부과
- (부과기간) '21.4월분 ~ '22.1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고지(10개월간)

* 별도 신청 없이 10회 정산분할 적용

* 10회 분할납부를 원하지 않아 일시납 신청하는 경우 일시납 가능

제도개선 주요내용

건강보험 신규가입자('21.3.1. 가입) 보험료

보험료 경감

외국인 월 보험료		유학생 월 보험료
₩131,790	30% 적용 →	₩39,540

3월 정산보험료 분할

3월 보험료		①	②	③	…	⑩
₩39,540	10회 분할 →	₩3,950	₩3,950	₩3,950		₩3,990

실제 납부할 보험료

첫회 보험료		유학생 월 보험료		1회 분할분
₩43,490	=	₩39,540	+	₩3,950

제도개선 주요내용

건강보험 기존가입자 보험료

보험료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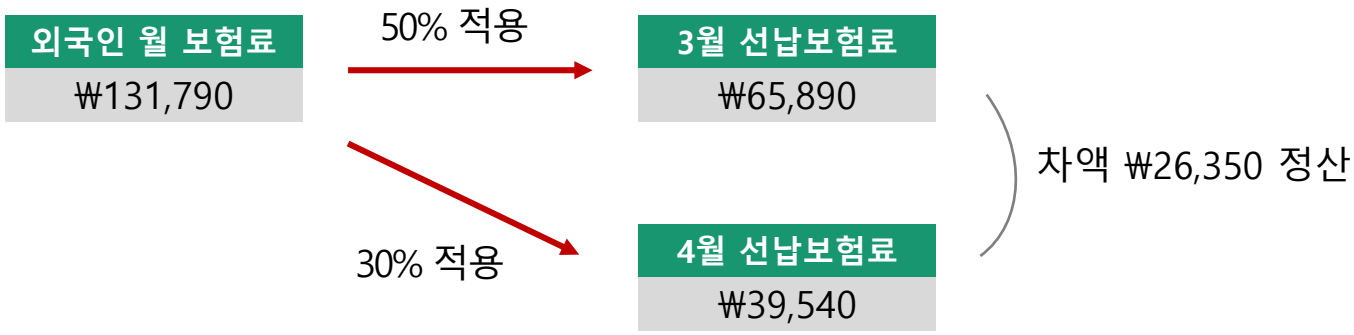

실제 납부할 보험료

4월 보험료	=	4월 선납보험료	-	3월분 정산환급
₩13,190		₩39,540		₩26,350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03 향후 일정

향후 일정

자격취득 및 보험료 고지

자격취득

√ '21.2.22. 사전 자격취득처리 및 안내문(+건강보험증) 발송
√ 건강보험 가입일자는 '21.3.1.

- (대상) '21.3.1.에 건강보험에 가입되는 외국인 유학생
- (시기) '21.2.22.에 미래일자('21.3.1.)로 사전 자격취득처리
  * '21.3.1.에 안내문 및 건강보험증이 도달하여 바로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처리
- (안내문) 보험료, 납부시기, 보험급여 혜택, 자동이체 방법 등
  * 한국어 + 국적별 언어(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향후 일정

자격취득 및 보험료 고지

보험료 고지

√ '21.3.1. 건강보험 가입되는 유학생의 3월분 정산보험료는 10회 분할하여 고지

- 4월 보험료(43,490원) = 4월 선납보험료(39,540원) + 1회 분할분(3,950원)

구분	3.1. 가입	3.2.~3.5. 가입	3.6.~3.31. 가입
최초부과월	3·4월분 보험료	4월분 보험료	4·5월분 보험료
첫회 납부보험료	43,490원	39,540원	79,080원
산정일	3.5.	3.5.	4.5.
납부마감일	3.25.	3.25.	4.25.

향후 일정

홍보

< 주요 홍보내용 >

√ 리플릿 제작 배포('21.2.22.)

- 대학교, 교육부, 출입국관리청, 지역본부 및 지사

√ 외국인 보험료 고지서 이면 홍보('21.2.10.)

- 3월분~4월분 선납보험료 고지서에 안내

√ 온라인 홍보

- 홈페이지(공단, 복지부, 교육부), 카드뉴스, SNS

√ 대학교 담당자 설명회('21.2.1.~2.2.)

- 본부에서 대학교 대상 화상교육 실시

향후 일정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 (대상) 외국인 유학생 및 대학담당자
- (주요내용) 외국인 유학생 당연적용 안내,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
  * 유학생 사용 상위 6개 언어(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몽골어, 러시아어) 번역
- (제작수량) 10만부 (지사 4만부, 대학교 6만부)
  * 법무부, 교육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는 파일형태로 제공
  * 공단홈페이지 업로드
- (추진일정) ’21.2월말 배포 예정

향후 일정

홍보

제도안내문 제작(파일 배포)

- (대상) 외국인 유학생 및 대학담당자
- (주요내용)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탈퇴·보험료·급여혜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

  * 유학생 사용 상위 6개 언어(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몽골어, 러시아어) 번역
- (배포방안) 전자문서로 전달(대학교), 교육부·공단 홈페이지 업로드 예정

  * 법무부, 교육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는 파일형태로 제공
- (추진일정) '21.2월 중순 예정

향후 일정

홍보

고지서 이면 홍보

- (대상) 3월분~4월분 외국인 선납보험료 고지서
- (주요내용) 유학생 당연적용 시행 안내

온라인 홍보

- 홈페이지(공단, 복지부, 교육부, 외교부 등) 홍보
- 카드뉴스 제작 및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홍보
- 2월부터 게시 예정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04 질의응답

질의응답

Q1. 유학생은 언제부터 건강보험에 가입되나요?

√ 유학생 당연적용 시행일인 2021.3.1.

-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D-2)은 2021.3.1.에 가입됩니다.
- 어학연수생 등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받은 유학생은 국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Q2.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공단지사에 방문해야 하나요?

√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자동으로 가입처리 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F-4) 유학생이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 체류지(거소지),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질의응답

Q3. 당연적용 시행일('21.3.1.)에 취득되는 신규가입자 보험료

√ 43,490원 (4월 선납보험료 39,540원 + 3월 정산보험료 분할분 3,950원)

- 유학생은 '21.3월분 보험료부터 외국인 보험료의 30% 부과 → 월 보험료 **ⓐ39,540원**
- 시행일('21.3.1.)에 취득되는 신규가입자는 3월 보험료와 4월 보험료가 동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3월 정산보험료 10회 분할납부 → 1회 분할분 **ⓑ3,950원**

3월 보험료	10회 분할 →	①	②	…	⑩
₩39,540		₩3,950	₩3,950		₩3,990

- 따라서, 첫회 보험료는 **43,490원 (ⓐ+ⓑ)**

첫회 보험료	=	유학생 월 보험료	+	1회 분할분
₩43,490		₩39,540		₩3,950

질의응답

Q4. 기존 가입자 보험료

√ **기존 가입자도 '21.3월분부터 보험료 30% 부과 적용**

- 2월에 고지되는 3월 선납보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50% 적용된 금액(65,890원) 납부
- 2021.3.5.에 4월 선납보험료 산정(30% 부과 적용) → **ⓐ39,540원**
- 3월분 30% 부과 적용하여 정산처리 → 차액 **ⓑ26,3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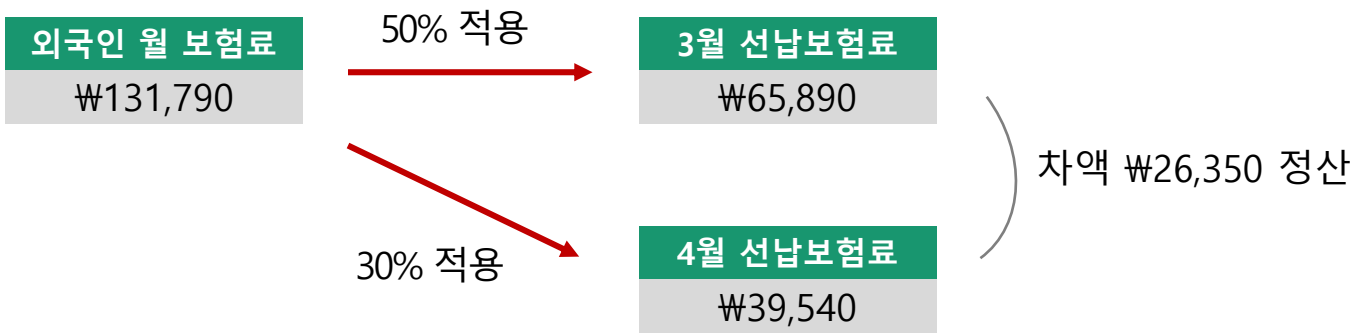

- 따라서, 4월분 보험료는 **13,190원 (ⓐ-ⓑ)**

실제 납부할 보험료	=	4월 선납보험료	-	3월분 정산환급
₩13,190		₩39,540		₩26,350

질의응답

Q5. 건강보험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일부부담) 입원 및 외래 진료비의 일부만 부담하여 본인부담금이 적음
- (건강검진혜택) 일반검진 및 암검진 혜택 제공
- (이용의 편리성) 진료 후 별도의 보험금 청구절차 없음
- (병원 접근용이) 국내 설립된 대부분의 의원, 병원, 약국 등 이용 가능

Q6.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입원은 진료비의 20%, 외래는 30~60%를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불합니다.

* 진료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만 해당되며, 비급여는 본인이 전액 부담함

질의응답

Q7. 가족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나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인증받은 후 제출합니다.

서류발급	→	서류인증	→	번역공증
가족관계, 혼인사실 증명서류		국적국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공증받은 한글번역본 첨부

- (서류인증)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의 경우, 국적국 외교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필요
- (번역공증) 공증인이 공증하거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한글번역본 첨부
- (유효기간) 국내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외국서류는 발급일(확인일)로부터 9개월 인정

질의응답

Q8.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외국의 법령

- 정부 간 협정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의무 면제하는 경우(프랑스)
- 본국에서 자국민의 국외 발생 의료비를 보상하는 경우(일본)
- 정부관료, 군인, 퇴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미국, UN)

② 외국의 보험

- 본국에서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하다가 국내 입국 후 계속해서 해당 보험으로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국내에서 출시된 보험상품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제외 불가능
  * 외국인등록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면 건강보험 가입제외 인정

③ 사용자와의 계약

- 외국 본사에서 우리나라로 직원을 파견하면서 단체보험 혜택을 주거나 의료보험을 대납하는 경우
- 외국 회사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경우 등

※ 위의 사유 없이는 건강보험 가입제외 불가합니다.

질의응답

Q9. 일본 유학생이 당연적용 시행('21.3.1.) 이전에 미리 건강보험 가입제외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 가입 이전에 미리 가입제외 신청 가능합니다.

Q10. 어학연수 중인 재외국민도 유학생으로 인정하여 입학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재외국민 어학연수생은 입학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재외동포(F-4)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경우만 유학으로 인정합니다.

※ 대학부설 어학원 및 기타기관 연수생은 인정 불가

질의응답

Q11. 방학동안 본국(외국)에 오래 다녀오는 경우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가입자 자격상실).**

※ 1개월 미만 국외체류하는 경우 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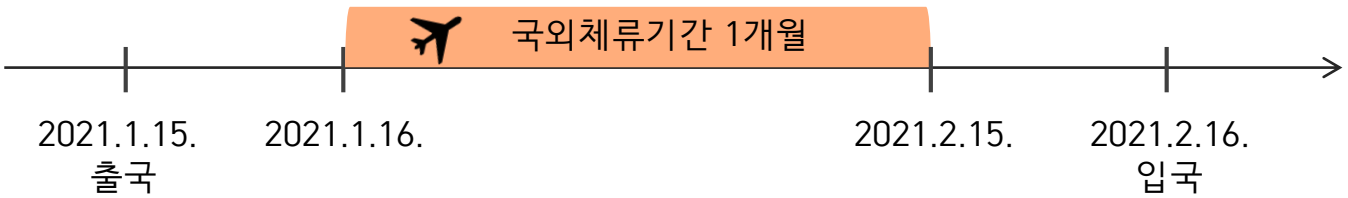

→ **보험료 면제대상**

질의응답

Q12. 휴학생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 휴학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체류하는 경우에는 국외체류기간 중 보험료 면제됩니다.

Q13. 재외국민인데 군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 군복무 기간 중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공단에서 부담하던 진료비용은 국방부에서 대납(공단-국방부 진료비 정산)하고 있으며,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Q14.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어 직장가입자가 되었습니다. 지역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통해서 직장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지역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 '21.2.15. 일자로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2월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고 3월부터 직장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21.2.1. 일자로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2월부터 직장보험료를 납부합니다. (1일자 기준)

Q15.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와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나요?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와 세대를 합가하여 보험료를 함께 납부하더라도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 다만, 국내 체류지(거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질의응답

Q16. 재외동포(F-4) 대학원생도 외국인 보험료의 30%만 납부하면 되나요?

√ 재외국민, 재외동포(F-4) 대학원생은 보험료 경감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가입일	보험료 적용 ('21.3월분부터)
유학(D-2)	외국인등록일	30%
일반연수(D-4)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30%
재외국민	교육부 인정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일 (어학연수 불인정)	대학 이하인 경우 30% (대학원 불인정**)
재외동포(F-4)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포함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불인정 (보험료 100% 적용)

질의응답

Q17. 등록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고지서를 받을 수 없는데, 학교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안되나요?

√ 학교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는 없으며,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이메일 및 모바일로 고지서를 간편하게 받아보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Q18.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병원, 의원 등을 방문할 때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됩니다.

- 납부기한의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제한

√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보험료 50만원 이상, 기타징수금 10만원 이상인 경우

√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내 소득, 재산 등에 대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Q19.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3회 이상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월수만큼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Q20. 유학생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건강검진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2년(비사무직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

  * 2021년도는 홀수 년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이 됩니다.

외국인민원센터 안내

서울·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 운영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해당 외국인민원센터로 방문

- (처리업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의 자격취득·변경, 제증명 발급, 보험료 납부 등
  ※ 직장가입자 제외
- (이용대상)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센터명	관할지역	주소
서울센터	서울 전역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
안산센터	안산, 시흥, 군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4층
수원센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청궁빌딩 1층
인천센터	인천, 부천, 김포, 광명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88, 부평대로우체국 7층
의정부센터	의정부, 남양주, 가평, 포천, 동두천, 연천, 양주, 구리, 고양, 파주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타워 9층

※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공단지사로 방문

(경기도 평택, 과천, 의왕, 안양, 안성, 하남, 이천, 광주, 양평에 거주하는 경우 공단지사로 방문)

외국인민원센터 안내

서울외국인민원센터

–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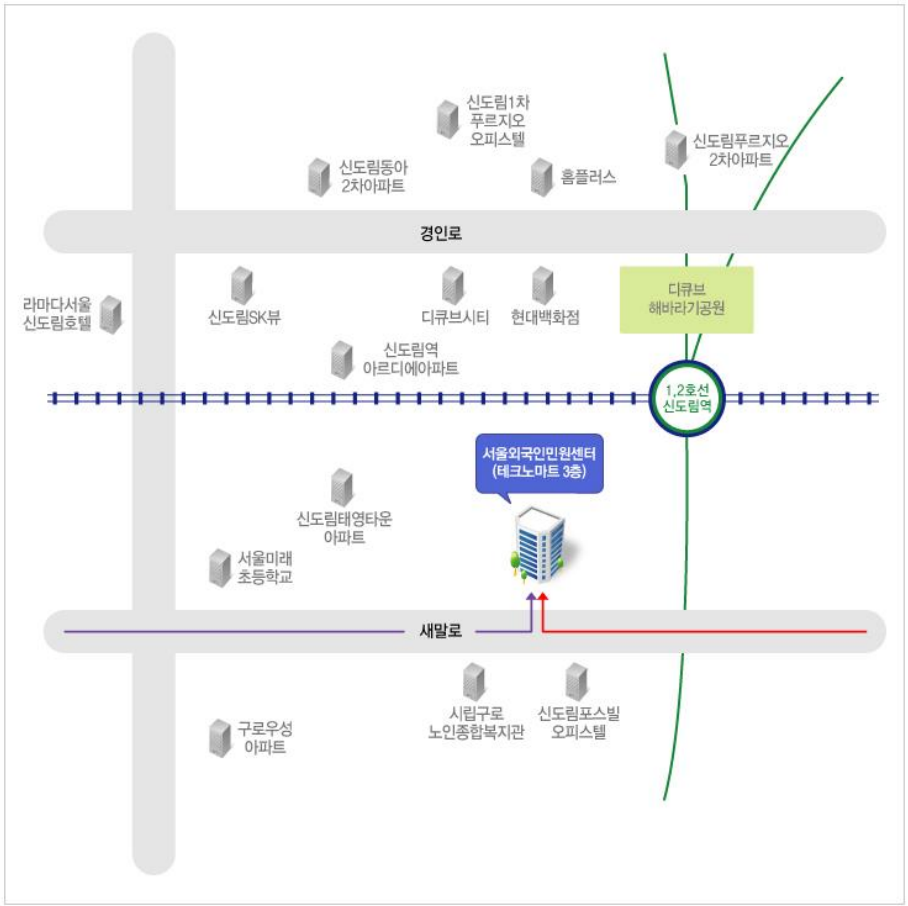

외국인민원센터 안내

안산외국인민원센터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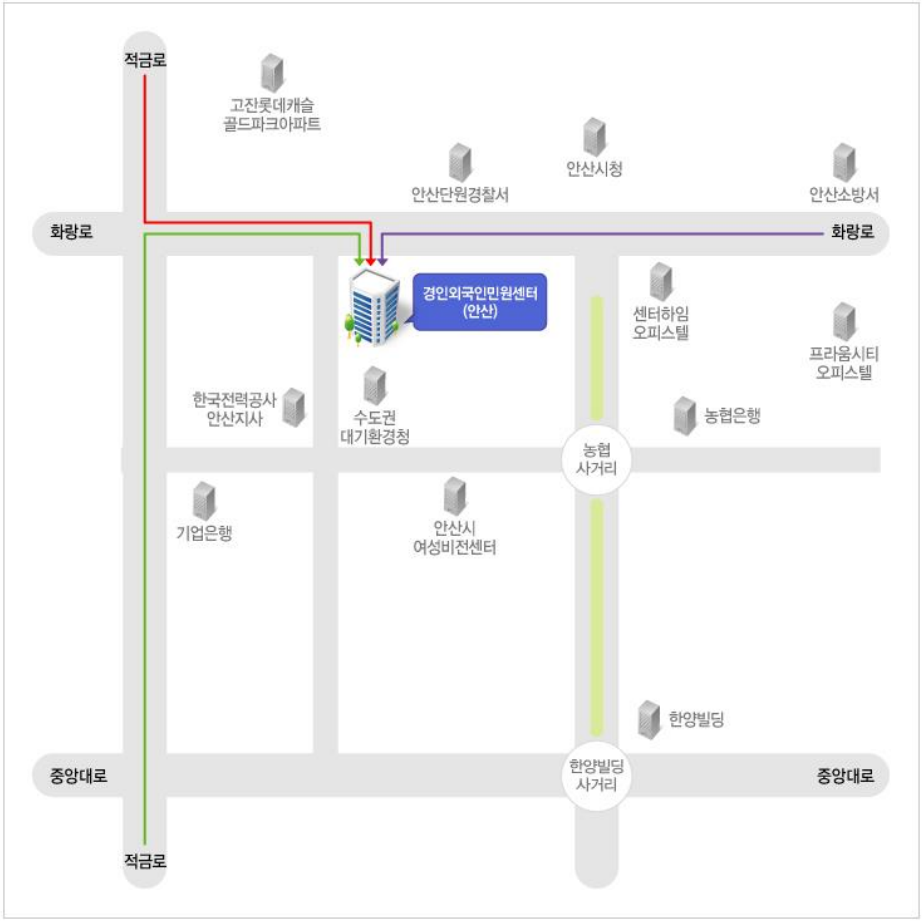

외국인민원센터 안내

수원외국인민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청궁빌딩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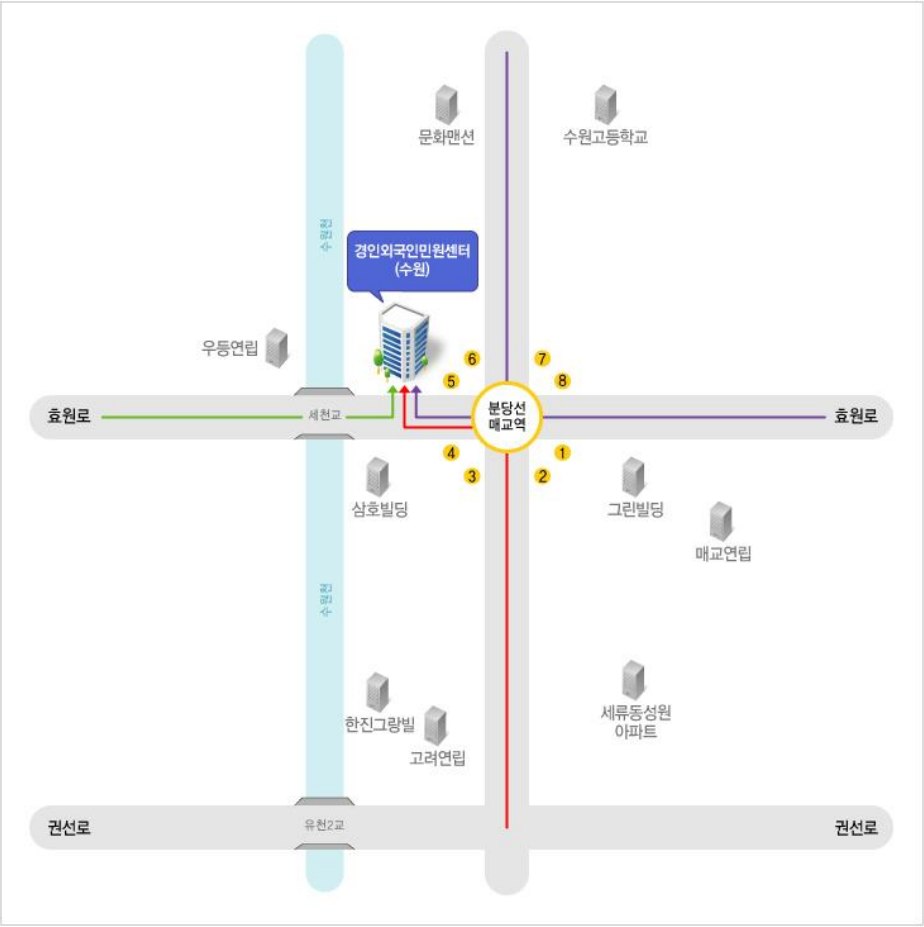

외국인민원센터 안내

인천외국인민원센터

–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88, 부평대로우체국 7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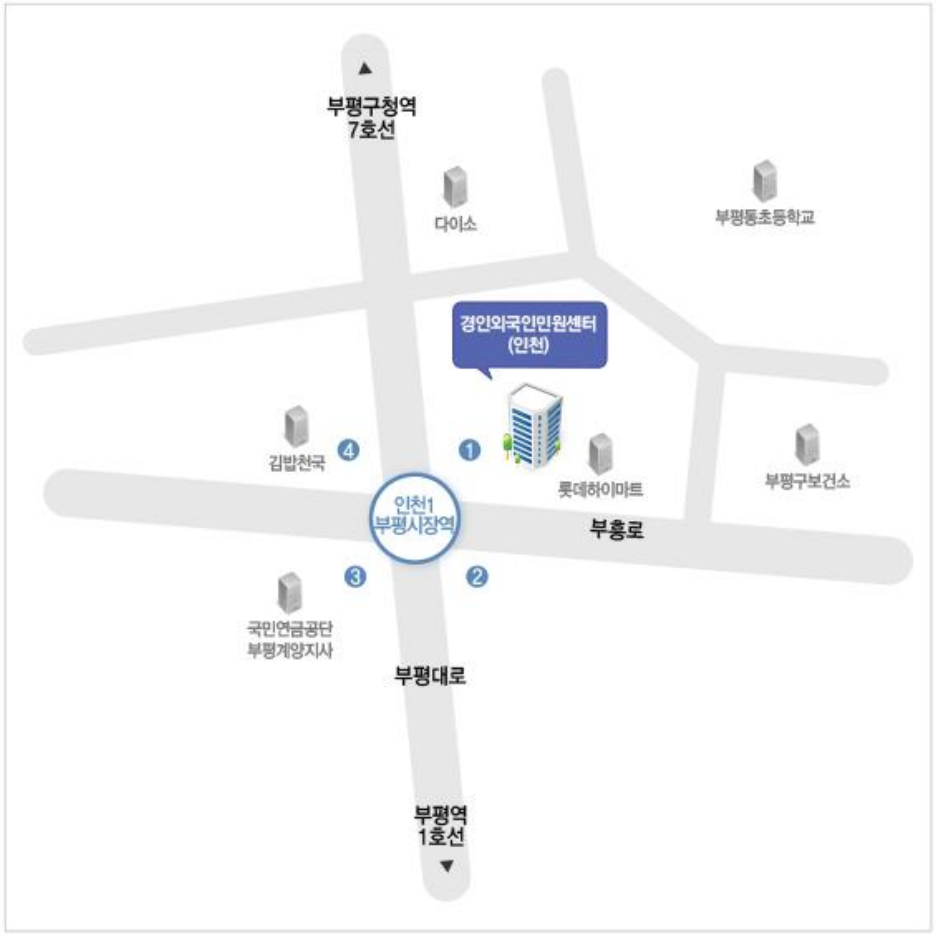

외국인민원센터 안내

의정부외국인민원센터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타워 9층



감사합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